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7.

발의자 : 이광희 · 박지원 · 한병도
진성준 · 김문수 · 김기표
양부남 · 윤종군 · 허종식
양문석 · 민병덕 · 김윤
김우영 · 전용기 · 채현일
박성준 · 정춘생 · 박홍배
문진석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·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, 출자·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출자·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

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
출자·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
자 함(안 제17조제3항).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본문 중 “계약”을 “계약(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회계처리의 원칙 등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② (생략) <p>③ 출자·출연 기관이 <u>계약</u>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회계처리의 원칙 등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② (현행과 같음) <p>③ ----- <u>계약(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</p>
<p>④ ~ ⑥ (생략)</p>	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